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9호

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(훈령)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항공안전감독 국제기준(DOC8335)이 '22년에 개정됨에 따라 운항감독관의 자격과 경험요건 등을 개선하고,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조종분야 자격요건 및 사용사업 및 자가용 감독관의 업무범위와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경험요건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독관 출신(LCC 등)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비행시간 기준을 하향하고자 함(現 5천→ 4천)(안 별표 1)
- 나.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조종분야 자격요건에 '운송용조종사' 자격 소지자도 추가하고, 항공기사용사업 및 자가용 감독관의 업무범위와 필요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경험요건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(안 별표 1)

다. 연간감독계획 수립 관련 전년 실적분석을 통한 감독계획 수립 필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시기를 당해연도 1월로 조정(現 전년도 12월)하고, 회전익 운항감독관 자격요건 중 '비행기'를 '헬리콥터'로 수정하고자 함 (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다. 의견 보내실 곳

- 1) 소속 :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
- 2)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- 3) 전화/팩스 : 044-201-4269 / 044-201-5629
- 4) 이메일 : inhopark@korea.kr